# 「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」고시개정(안) 행정예고

2015. 3. 11

중소기업청

##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94호

「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15년 3월 11일 중소기업청장

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 1. 개정 이유

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융회사 등 출연금의 재단 및 중앙회 간 배분비율이 보증위험 분담비율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은행 등(제1금융회사) 출연금의 재단과 중앙회 간 배분비율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○ 은행등 출연금 중 재단과 중앙회 간 배분비율을 **7**0 대 30"에서 **6**0 대 40"으로 변경(안 제1호 가목)

#### 3. 의견 제출

「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종료일 개정고시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: 302-701, 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중소기업청, 참조: 기업금융과, 전화 042-481-4454, 팩스 042-472-327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- 호

#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개정(안)

제정 2006.10.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-29호 개정 2008.01.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- 3호 개정 2009.03.0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16호 개정 2009.08.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35호 개정 2010.09.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-32호 개정 2013.12.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63호 개정 2014.02.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 9호

# 1. 은행등(제 1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(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)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: 60 대 40

나.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

기본배분	재정상황	보증실적	지자체 출연실적	특수상황
25%	15%	35%	20%	5%

다.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 : ① + ② + ③ + ④

- ① 기본배분 : 재단 총 출연금 ×25% ×1/16
- ② 재정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15% ×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지수 반영율
- ③ 보증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35% ×(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 /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)
- ④ 지자체 출연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 20% ×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
- ⑤ 특수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5%
  - \* 특수상황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

# [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]

재정자립도지수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 영 율	0.55/16	0.60/16	0.65/16	0.70/16	0.80/16	0.85/16	0.90/16	0.9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1.05/16	1.10/16	1.15/16	1.20/16	1.30/16	1.35/16	1.40/16	1.45/16

# [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]

출연실적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 영 율	1.45/16	1.40/16	1.35/16	1.30/16	1.20/16	1.15/16	1.10/16	1.0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0.95/16	0.90/16	0.85/16	0.80/16	0.70/16	0.65/16	0.60/16	0.55/16

라. 단,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재단의 계약직 인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재단과 중앙회 간 배분 이전에 우선 공제하여 각 재단에 배분하되, 인원은 중소 기업청장이 정한 범위에서 운용한다.

# 2. 농업협동조합등(서민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· 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.

- 가. 서민 보증부협약대출(이하 "햇살론"이라 한다)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,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.
- **나.**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,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.
- 다.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.
- 라.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.
- 마. 단, 보증재원(재보증회계 포함)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.
- 바.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 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,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.

# 3.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,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.

# [금융회사별 출연 총액]

금융회사	농업 협동조합	수산업 협동조합	상호 저축은행	새마을 금고	신용 협동조합	산림조합
출연총액(억원)	3,859	334	2,000	2,362	1,362	83

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<u>2015년 5월 1</u>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